

고 성 군 세 감 면 조 례 증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69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4. 24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24
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2001. 5. 2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임대주택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(안 제1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60㎡에서 전용면적 85㎡로 확대 조정하려는 고성군세감면조례 증개정조례안은
-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심각한 전세난을 해소함과 아울러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경상남도 세정 13400-10184(2001.2.9)호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5. 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